

#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약

제	정	2017.	8.	30.
개	정	2020.	5.	15.
개	정	2021.	4.	22.
개	정	2022.	8.	19.
개	정	2024.	7.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이라한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운영규약은 종사자, 센터(분소 포함), 이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7.3.]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라 함은 센터에 고용된 모든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소장: 센터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센터의 장
  - 나. 총괄매니저: 팀의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팀의 장
  - 다. 매니저: 팀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
2. “상담” 이라 함은 상담, 검사,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분소” 라 함은 재단 내 상담사업 실무자가 배치되어 상담실이 운영 되는 곳을 말한다.
4. “강사” 라 함은 상담과 관련하여 출강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2021. 4. 22.>

가. 위탁(촉)강사 : 상담 및 학교밖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강사

나. 상시프로그램 강사 : 학교 연계 등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전반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채용되는 강사를 말하며, 주강사 및 보조강사로 구분

다. 특별프로그램 강사 : 전문성, 특별 강연, 전문적인 강의 및 원고 제출, 강좌 수강생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강사 등 전문적인 강좌의 강사로서 그에 부합된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증빙 서류에 상응하는 확인을 거친 강사

5. “이용자” 라 함은 센터 및 분소에서 운영하는 상담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상담 등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상담수수료, 검사수수료, 실비 등을 말한다.

7. “환급” 이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기준에 의해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3.]

## 제2장 센터 운영 관리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소장은 센터를 통할하며 센터의 사업계획 및 추진을 책임진다. <개정 2024. 7.3.>

② 총괄매니저는 팀을 통할하며 팀의 사업계획 및 추진을 책임진다. <개정 2024.7.3.>

③ 매니저는 담당업무의 사업계획 및 진행을 책임진다. <신설 2024.7.3.>

**제5조(근태관리 책임과 권한)** 근태업무 담당자는 평일 오전 09:00기준 직원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태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직원이 확인 된 경우 근태담당 총괄매니저 및 소장에게 보고 후 복무확인서, 경위서 등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9:00 ~ 21:00까지

2. 토요일 : 09:00 ~ 17:00까지

3. 휴관일 : 법정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그 밖에 정부 등에서 임시 휴무일로 정한 날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① 소장은 센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8조(개인정보관리)** ① 소장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기타 센터관리)** 기타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재단 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7.3.>

## 제3장 프로그램 이용료 등

**제10조(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유료프로그램의 등록(접수)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이용자는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  
용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7.3.>

1.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2조(이용료 환급 및 감면)** ① 이용료에 대한 환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에 대한 감면은 “별표 3”와 같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③ 기타 이용료, 환급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안내)** 소장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이용료, 환급,

감면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 제4장 강사관리

**제14조(강사 운영기준)** ① 위탁(촉)강사는 시설별 위탁(촉)강사에 대한 정원은 없으며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에 따라 모집(상담 및 학교밖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하며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체결을 통해 운영한다.

② 상시 및 특별 프로그램 강사는 「상시 및 특별프로그램 강사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개정 2024.7.3.>

[전문개정 2021. 4. 22.]

**제15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재단 강사 운영지침」과 「상시 및 특별프로그램 강사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4. 22., 2024.7.3.>

② 강사료는 다음 달 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촉강사의 강사료는 프로그램 종료 후 지급한다.

**제16조** 삭제 <2021. 4. 22.>

**제17조(기타사항)** 기타 강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 강사 운영지침」 및 「상시 및 특별프로그램 강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4. 22., 2024.7.3.>

## 제5장 습득물 운영관리

**제18조(습득물의 구분)** 습득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품 : 전자기기, 지갑, 고가의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2. 비 귀중품 : 소모성 제품, 문구류, 우산, 의류 등

**제19조(습득공고)** 습득물의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귀중품 : 14일간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 후 관할 경찰서로 물품 이관

2. 비 귀중품 : 14일간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 후, 시설 내에 1개월 보관 후 폐기
3. 유실물 공고 시 ‘물품종류’, ‘습득일’, ‘습득장소’, ‘사진(귀중품 제외)’, ‘보관기간’, ‘비고 (내용물)’, ‘사후처리 사항’ 명시

**제20조(습득물의 반환 및 조치)** 습득물의 반환 및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유실자 확인 가능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확인, 서명 후 유실물 반환
2. 습득공고 후 청구권자가 없을 시 소장의 승인 후 유실물 폐기, “별지 제5호 서식”에 처리사항  
날인

## 제6장 기 타

**제21조(규약 제정 및 개정 등)** 본 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기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제 규정 등 상위규정 및 법령에 따른다.

### 부칙(2017.8.30.)

**제1조(시행일자)** 이 규약은 재단에서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발령 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21.4.22.)

**제1조(시행일자)** 이 규약은 재단에서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자)** 이 규약은 재단에서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4.7.3.)

**제1조(시행일자)** 이 규약은 본부에서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2.8.19.>

### 이용료 기준

분야	프로그램	대상	횟수	수강(이용)료	비 고
상담	개인상담	청소년 성인	1회	30,000원	
	집단상담	청소년	1회	10,000원	
		성인	1회	15,000원	
종합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청소년 성인	1회	200,000원 (해석비 포함)	
치료사업	놀이치료	청소년 성인	1회	30,000원	
	미술치료	청소년 성인	1회	30,000원	
개별 심리검사	지능검사	청소년 성인	1회	40,000원 (해석비 별도)	
	MMPI	청소년 성인	1회	20,000원 (해석비 별도)	
	기타검사	청소년 성인	1회	10,000원 (해석비 별도)	
	해석비	청소년 성인	1회	30,000원	

[별표 2] <개정 2022.8.19.>

### 이용료 환급 방법 및 기준

구 분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상담 프로그램	○ 프로그램 1일전	- 당월 이용료 전액 환급	
	○ 프로그램 당일	- 당일 이용료 환급 불가 -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전액 환급	

- ※ 기타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른다.
- ※ 프로그램 신청자의 취소 시, 사업 추진 상 미리 구매, 예약 등으로 취소가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공제하며, 손해액이 납부금액을 초과 할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한다.
- ※ 운영관리프로그램 구축 후, 관련 내용 개정
- ※ 가족일 경우: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류(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등), 방문자신분증

[별표 3]

이용료 감면기준

구분	내용	세부기준	비고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성남시, 경기도, 정부관련 부처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 「사회복지사업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대상자 (만9~만24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단, 지원연령을 이 법에 대한 해당 기준으로 적용	지원연령은 해당법에 의해 18세 미만으로 하며 취학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기타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행사의 목적이 성남시 또는 재단에 상당한 이익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일 때 · 별도의 시설별 심의를 통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센터의 장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
100분의 50 감면	「성남시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 CYS-Net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전에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실비 차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등 취약계층의 이용료 납부는 제외하여야 함.

※ 감면혜택은 감면신청서 제출일 이후의 프로그램 접수 내역에 대해서만 받음

※ 감면혜택은 감면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신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됨







# 감 면 신 청 서

회원번호		프로그램명	
성 명 (내담자)		성 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        )월, 총(        )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원과의 관계: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귀중

결 재				



